

제 1688 호
1992. 7. 14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이 상 배
편집인: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781-6111~3
인 쇄: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278-6111~3

시 보

차 례

● 표 례

| | | |
|----------|-------------------------------------|---|
| 제 2942 호 | 서울특별시행정현안취급조례공개경조례 | 2 |
| 제 2943 호 | 서울특별시시내버스통의운송사업지휘유위하통목색파서면적조례 | 4 |

| | | | | | | | | | | | | | | | | | | | |
|--------|--|--|--|--|--|--|--|--|--|--|--|--|--|--|--|--|--|--|--|
| 공 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시 끝머림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질다가 상천경제 뛰어서 다시잡자"

| | |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조 례</p> </div> <p>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2. 7. 14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p> <p>●서울특별시조례제2942호</p> |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증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의 시민생활국란의 제7호 내지 제11호를 내무국란의 제6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 제9호 중 "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함)"을 "등록체육시설업"으로 한다.</p> <p>(별표)의 보건사외국란에 제57호 및 제5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 <p>57. 장애인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자동차(배기량 1,500cc 이하에 한한다)의 면세용도물품증명</p> <p>58. 장애인용수입물품확인증명</p> | <p>○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제31조의2</p> <p>○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20조제5항</p> | <p>구청장</p> <p>구청장</p> |
| <p>(별표)의 시민생활국란의 제1호 내지 제3호를 산업경제국란의 제110호 내지 제112호로 하고, 제113호 내지 제1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
| <p>113. 기술집약형중소기업확인증명</p> <p>114. 대형점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대형점개설허가 및 매장면적 증설허가</p> <p>나. 영업개시·휴업·폐업 및 매장면적 축소신고의 수리</p> <p>다. 사업의 양도·양수승인 및 지위승계신고의 수리</p> <p>라. 영업의 정지·제한 및 허가취소</p> <p>마. 파징금의 부과·징수</p> <p>바. 청문</p> | <p>○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p> <p>○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 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 · 제8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p> <p>○ 도·소매업진흥법 제13조의2</p> <p>○ 동법 제10조 및 제13조의3</p> <p>○ 동법 제11조·제13조의3,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4조</p> <p>○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3</p> <p>○ 동법 제23조</p> <p>○ 동법 제24조</p> | <p>구청장</p> <p>구청장</p> |

| | | |
|--|--|---|
| <p>ㄷ. 보고징수 및 검사</p> <p>아.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15. 대규모소매점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16. 공공법인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명칭변경 등 명령</p> <p>117. 공공법인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18. 상점가진홍조합에 대한 지원</p> | <p>○ 동법 제5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3항</p> <p>○ 동법 제57조제1호·제6호 및 제58조</p> <p>○ 동법 제18조·제56조제1호 및 제58조</p> <p>○ 동법 제49조의2</p> <p>○ 동법 제56조제4호 및 제58조</p> <p>○ 동법 제32조</p> |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p>구청장</p> |
| <p>(별표)의 문화관광국관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
| <p>23. 사립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등록·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p> <p>나. 지도·지원 및 서류제출 요구</p> <p>다. 폐관신고의 수리</p> <p>라. 과태료의 부과·징수</p> | <p>○ 도서관진흥법 제25조·제37조제2항 및 제38조</p> <p>○ 동법 제26조 및 제38조</p> <p>○ 동법 제27조 및 제38조</p> <p>○ 동법 제45조제1항</p> | <p>구청장</p> |
| <p>(별표)의 도시계획국관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
| <p>21.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설치의 승인요청</p> | <p>○ 도시계획법 제19조제3항제2호</p> | <p>구청장</p> |
| <p>(별표)의 시민생활국관의 제5호를 환경녹지국관의 제87호로 하고, 시민생활국관은 삭제한다.</p> <p>(별표)의 교통국관 중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관의 제20호, 제22호 내지 제24호, 제26호 내지 제28호, 제30호, 제32호, 제33호, 제36호, 제38호, 제42호 및 제46호 중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구청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동관 중 제16호를 삭제하고, 동관에 제71호 내지 제7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
| <p>56. 과징금의 부과·징수(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6호 가목 및 다목, 제15호, 제17호, 제23호 및 제27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p> | <p>○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p> | <p>구청장</p> |

| | | |
|---|---|-----|
| 71. 택시운전자격의 요격금지 처분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 제2항·제3항, 불법시행령 제6조의3 및 불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2항 | 구청장 |
| 72. 택시운전자격자에 대한 처분 | ○ 동훈 제31조의3 및 제33조의4 제5항 | 구청장 |
| 73.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명령 | ○ 동법 제58조·제59조 및 불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30호 | 구청장 |
| 74.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 동법 제59조·제76조제1항제4호 및 불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63호·제14조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안전의 제22호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통목세과세면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2. 7. 14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①

서울특별시조례제2043호

서울특별시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 위한통·과세면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목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면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발급 받은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나)목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지

말을 포함한다)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목세를 면제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세국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 등)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